법무부 보도설명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. 10. 30.(금)

특정활동(E-7)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10명의 가족을 초청했다는 디시인사이드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.

○ 최근 <디시인사이드>와 <에펨코리아>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 중인 'E-7 비자로 가족 10명 전부 한국으로 데려옴'이라는 제목의 게시글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설명드립니다.

○ 해당 게시글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특정활동(E-7) 외국인이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가족 10명을 국내로 초청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였다며, 무슬림 국가 출신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나,

○ 법무부는 특정활동(E-7) 체류자격 외국인의 가족동반 체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, **특정활동(E-7) 체류 외국인 중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.6%, 초청인 1인당 평균 초청 가족은 1.6명**이며, **5명 이상 초청한 경우는 0.2%에 불과**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(10명의 가족을 초청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없음)

○ 특정활동(E-7)을 포함하여 합법으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동반(F-3)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한정되며, 부모·형제자매·친인척은 초청 대상이 아닙니다.

- 비전문취업(고용허가제, E-9) 등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노동자는 가족을 동반(F-3) 비자로 한국에 초청할 수 없습니다.

- 다만 비전문취업(E-9)이 숙련기능인력(E-7-4)으로 전환되면 법률상 가족(배우자, 미성년 자녀에 한함),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(가족 인원수에 따른 소득요건), 독립 거주지 등을 심사하여 가족초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

※ (숙련기능인력(E-7-4) 전환 요건) 국내 장기근속, 한국어 능력(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등), 소득(2,600만원 이상) 등을 점수제로 평가하여 연간 숙련기능인력(E-7-4) 쿼터 범위 내에서 전환

○ 특정활동(E-7) 등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요건도 높아집니다.

⇒ 예를 들어 본인·배우자·자녀 2명(총 4인 가구)의 경우, 2026년 기준 연간소득 약 3천9백만원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.

○ 게시글에 첨부된 외국인등록증,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, SNS 게시물은 서로 다른 출처의 이미지로, 동일인에 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. ▨

담당 부서	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	책임자	과 장	이향숙	(02-2110-4055)
		담당자	사무관	나영미	(02-2110-410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